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06.30)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2013)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사건번호 2018-51

엘리엇 어소시엣 엘.피. (미국) (ELLIOTT ASSOCIATES, L.P. (U.S.A.))  
(이하 “청구인”)

대한민국

(이하 “피청구국”)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집합은 “당사자들”로 칭한다.)

---

절차 명령 제 2 호

---

중재판정부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Mr. Oscar M. Garibaldi

Mr. J. Christopher Thomas QC

사무국

상설중재재판소

2019 년 5 월 14 일

2019년 3월 22일 당사자들의 대표 및 대리인, 중재판정부 중재인 전원 및 상설중재재판소가  
 입회하여 제1차 절차회의가 제1차 절차회의가 화상회의로 개최된 바,

2019년 4월 1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 후 절차 명령 제1호를 발부한 바, 동 명령은  
 절차 사안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사항을 기록하고, 미 합의된 사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 및 숙고하여 지시한 사항을 명시한 바,

동일, 중재판정부는 문서의 제출순서 및 문서제출단계에 적용할 기한 관련 재판소의 지침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절차일정표 관련 상호 협의하도록 초청한 바,

2019년 4월 15일 당사자들은 합의 가능한 사항 및 합의 불가능한 사항을 나타내는 절차일정표  
 초안을 중재판정부에 공동제출하고, 동일 각 당사자는 미합의 사항에 관한 각자의 입장을  
 표명한 바,

2019년 4월 25일, 중재판정부는 절차 일정표의 각 트랙 별 심리에정일 관련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도록 초청한바, 그리고 2019년 5월 10일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가 제안한  
 관련 참석 가능여부 및 추가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전달한 바,

동 명령은 절차일정표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사항을 기록하고, 미 합의된 사안의 경우  
 2019년 4월 15일 및 2019년 5월 10일 서신에 명시된 당사자들의 의견에 비추어  
 중재판정부가 지시하는 사항을 명시한다.

중재판정부는 다음 사항을 명한다:

1. 절차분리요청이 부재한 경우의 절차일정표

1.1 피청구국이(본안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했거나 그러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절차분리를 요청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답변서에 절차분리신청을 아니한 경우, 중재는  
 다음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트랙 A1):

<b>1단계: 제1차 서면제출</b>		
수정 청구서면	청구인	2019. 4. 4.
반박서면 (및 모든 이의제기)	피청구국	2019. 8. 30.
<b>2단계: 문서제출 및 비분쟁당사국의 서면제출</b>		
문서제출 요청	당사자들	2019. 10. 4.
문서제출에 대한 이의제기	당사자들	2019. 10. 25.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중재판정부에 제출)	당사자들	2019. 11. 15.

자발적 문서제출	당사자들	2019. 11. 29.
비분쟁당사국의 FTA 제11.20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제출 의사 통지	미국	2019. 11. 29.
이의제기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	중재판정부	2019. 12. 13.
비자발적 문서제출 및 자발적 제출 완료	당사자들	2020. 1. 10.
비분쟁당사국의 FTA 제11.20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제출	미국	2020. 1. 10.
<b>3단계: 제2차 서면제출</b>		
재주장서면 (및 해당하는 경우 본안전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청구인	2020. 4. 10.
재반박서면 (및 해당하는 경우 본안전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피청구국	2020. 7. 10.
(해당하는 경우, 본안전 이의제기에 관한 청구인의 재답변)	(청구인)	(2020. 8. 31.)
<b>4단계: 심리</b>		
반대신문 대상 증인 및 전문가 통지	당사자들	2020. 10. 5.
사전심리 회의	전원	2020. 10. 19.
심리	전원	2021. 1. 25. 주 및 2021. 2. 1. 주

2. 피청구국이 제 11.20 조 제 6 항을 근거로 본안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절차일정표

2.1 피청구국이 답변서를 통해 FTA 제 11.20 조 제 6 항 a호에 따라 본안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단, 기타 근거 제외), 심리 절차는 FTA 제 11.20 조 제 6 항 b호에 따라 분리된다. 이러한 경우, 중재는 다음 일정(**트랙 B1**)에 따라 진행된다:

<b>1단계: 제1차 서면제출</b>		
수정 청구서면	청구인	2019. 4. 4.
답변서 및 FTA 제11.20조 제6항 a호에 따른 본안전 이의제기	피청구국	2019. 8. 30.

<b>2단계: FTA 제11.20조 제6항 a호에 따른 본안전 이의제기에 관한 서면제출</b>		
본안전 이의제기에 대한 반박서면	청구인	2019. 10. 11.
본안전 이의제기에 대한 재주장서면	피청구국	2019. 11. 8.
본안전 이의제기에 대한 재반박서면	청구인	2019. 12. 6.
비분쟁당사국의 FTA 제11.20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제출 의사 통지	미국	2019. 12. 20.
비분쟁당사국의 FTA 제11.20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제출	미국	2020. 1. 17.
비분쟁당사국의 제출서면 관련 당사자들의 소견	당사자들	2020. 1. 31.
<b>3단계: FTA 제11.20조 제6항 a호 관련 심리</b>		
사전심리 회의	전원	심리 4주 전
심리관련 협의된 문서모음 제출	당사자들	심리 2주 전
심리	전원	2020. 4. 27. 주
<b>4단계: 예비사항 및 문서제출관련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제23조 2항에 따른 모든 본안전 이의제기 및 본안에 관한 서면제출</b>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		
<b>5단계: 예비사항 및 문서제출관련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제23조 2항에 따른 모든 본안전 이의제기 및 본안에 관한 심리</b>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		

3. 피청구국이 (i) 제 11.20 조 6 항 a 호 및 11.20 조 6 항 a 호 이외의 근거로, 또는 (ii) 11.20 조 6 항 a 호 이외의 근거로 (그러나 11.20 조 6 항 a 호를 근거로 하지 아니하여) 본안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일정표
- 3.1 피청구국이 답변서를 통해 FTA 제 11.20 조 제 6 항 a 호 그리고 제 11.20 조 제 6 항 외 다른 근거로, 또는 제 11.20 조 제 6 항 a 호를 제외한 근거만을 바탕으로 본안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중재는 다음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트랙 B2):

**1단계: 제1차 서면제출**

수정 청구서면	청구인	2019. 4. 4.
답변서 및 FTA 제11.20조 제6항 a호 그리고 제11.20조 제6항 외 다른 근거로, 또는 제11.20조 제6항 a호를 제외한 근거만을 바탕으로 하는 본안전 이의 제기	피청구국	2019. 8. 30.
피청구국의 절차분리요청에 대한 소견	청구인	2019. 9. 20.
(FTA 제11.20조 제6항 a호를 제외한 근거로 하는) 절차분리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 예정일 - 어떠한 경우이든 FTA 제11.20조 제6항 a호 에 따른 피청구국의 본안전 이의제기 관련 조치를 위하여 절차는 분리된다.	중재판정부	2019. 10. 4. 사유부재 결정, 이어 2019. 10. 18 사유명시 결정
<b>2단계: 본안전 이의제기의 절차분리에 관한 서면제출</b>		
본안전 이의제기 서면	피청구국	2019. 11. 1.
본안전 이의제기 서면에 대한 반박서면	청구인	2020. 1. 10.
본안전 이의제기 재주장서면	피청구국	2020. 2. 7.
본안전 이의제기에 대한 재반박서면	청구인	2020. 3. 6.
비분쟁당사국의 FTA 제11.20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제출 의사 통지	미국	2020. 3. 20.
비분쟁당사국의 FTA 제11.20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제출	미국	2020. 4. 3.
비분쟁당사국의 제출서면 관련 당사자들의 소견	당사자들	2020. 4. 17.
<b>3단계: 본안전 이의제기 절차분리에 관한 심리</b>		
사전심리 회의	전원	심리 4주 전
심리관련 협의된 문서모음 제출	당사자들	심리 2주 전
심리	전원	동 트랙의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추후 확정 예정
<b>4단계: 예비사항 및 문서제출관련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제23조 2항에 따른 모든 본안전 이의제기 및 본안에 관한 서면제출</b>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추후 확정 예정		
<b>5단계: 예비사항 및 문서제출관련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제23조 2항에 따른 모든 본안전 이의제기 및 본안에 관한 심리</b>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추후 확정 예정		

3.2 피청구국이 FTA 제 11.20 조 제 6 항 a호에 따른 본안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나, 제 11.20 조 제 6 항 의 다른 근거로 본안전 이의를 제기하며 절차분리를 요청하고 또한 중재판정부가 동 요청을 기각하는 경우, 중재는 다음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트랙 B3**):

<b>1단계: 제1차 서면제출</b>		
수정 청구서면	청구인	2019. 4. 4.
답변서 및 FTA 제11.20조 제6항(a)조에 따른 본안전 이의제기	피청구국	2019. 8. 30.
피청구국의 절차분리요청에 대한 소견	청구인	2019. 9. 20.
피청구국의 본안전 이의제기의 절차분리요청 불허 결정	중재판정부	2019. 10. 4. 사유부재 결정, 이어 2019. 10. 18. 사유명시 결정
<b>2단계: 문서제출 및 비분쟁당사국의 서면제출</b>		
문서제출 요청	당사자들	2019. 11. 8.
문서제출에 대한 이의제기	당사자들	2019. 11. 29.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중재판정부에 제출)	당사자들	2019. 12. 20.
자발적 문서제출	당사자들	2020. 1. 10.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에 대한 미국의 FTA 제11.20조 제4항에 따른 비분쟁당사국 서면제출 의사의 표시	미국	2020. 1. 10.
이의제기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	중재판정부	2020. 1. 24.
비자발적 문서제출 및 자발적 제출 완료	당사자들	2020. 2. 21.
비분쟁당사국의 FTA 제11.20 조 제4항에 따른	미국	2020. 2. 21.

서면제출		
<b>3단계: 제2차 서면제출</b>		
재주장 서면 (및 해당하는 경우 본안전 이의제기에 대한 반박)	청구인	2020. 5. 15.
재반박 서면 (및 해당하는 경우 본안전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피청구국	2020. 8. 14.
(해당하는 경우, 본안전 이의제기에 관한 청구인의 재답변)	(청구인)	(2020. 10. 2.)
<b>4단계: 심리</b>		
반대신문 대상 증인 및 전문가 통지	당사자들	2020. 11. 9.
사전심리 회의	전원	2020. 11. 23.
심리	전원	2021. 1. 25. 주 및 2021. 2. 1. 주

중재지: 영국 런던

(서 명)

---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대표